



## 교육감 규정

번호: A-802

제목: GPS 장비 설치 및 훈련과 버스 경로 시운행

항목: 학생 교통

발행: 2019 년 6 월 20 일

### 요약

이 규정은 차량 및/또는 학생의 위치 녹화, 보고 또는 정보 전송의 목적으로 장비 및/또는 기기 필수 설치 및 사용, 장비 및 기기 사용 훈련 및 버스 경로 시운행 완료에 대한 조항을 규정한다.

### I. GPS, 관련 장비 및 요건

- A. GPS 추적은 범지구 위치결정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사용자 또는 물체의 위치를 추적한다.
- B. 교육청과 교통 계약 또는 연장을 2018 년 6 월 30 일 이후 체결한 모든 버스 회사는 2019 년 7 월 1 일 이후 교육청이 스쿨버스 위치와 학생 탑승을(추적 시스템)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목적으로 선택한 GSP 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수락하고 학생이 이용하는 모든 버스에 이 추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.
- C. 추적 시스템은 반드시 학생이 이용하는 모든 학교 수업일에 작동해야 하며 추적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는 교육청 담당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.

### II. 일반 훈련 정책 및 관련 요건

- A. 연례 재교육 및 기타 계약 상으로 요구되는 훈련과 더불어 모든 2018 년 6 월 30 일 이후 효력을 가지는 교육청 학생 교통 계약 버스 회사는 2019 년 7 월 1 일 이후 버스 운전자, 직원 및/또는 수행원(안내원)에게 버스 경로 시운행 및/또는 추적 시스템 사용의 목적으로 연수일을 제공해야 한다.

### III. 문의처

본 규정 관련 문의:

학생 교통 담당실

뉴욕시 교육청

44-36 Vernon Blvd., 6<sup>th</sup> Floor

Long Island City, NY 11101

전화: 718-707-4343